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이스라엘/팔레스타인 자치영토에 대한 영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
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라말라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1. 18. ~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외공관의 분관·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관의 분관·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의 주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아르빌분관란 다음에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라말라분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주 이 스 라 엘 국 대 한 민 국 대 사 관 라 말 라 분 관	이 스 라 엘 국 / 팔레스타인자치영토 라 말 라		가자, 서안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